

## NEWSLETTER

April 2020

중국 그룹

China Practice Group

## CONTACT

##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현지법인 운영 관련 유의사항(3)



변호사 오승룡

T: 02.772.4329  
E: [seungryong.oh@leeko.com](mailto:seungryong.oh@leeko.com)

중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중국에 진출한 현지법인들(이하 '현지법인')을 포함하여 기업체들의 업무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, 그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분쟁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
위와 같은 상황에, 코로나19로 인한 민사분쟁사건의 재판실무에서 보다 정확하고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은 2020. 4. 20.에 <법에 따라 신종코로나전염병과 관련된 민사 사건을 적절하게 심리할 약간 문제에 관한 지도의견(1)(关于依法妥善审理涉新冠肺炎疫情案件若干问题的知道意见(一))>(이하 '사법해석(1)')을 공표하였습니다.

따라서, 본 뉴스레터에서는 지난 2020. 3. 4.자 뉴스레터에 이어서 위 사법해석(1)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, 현지법인이 경영 과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
## 1. 계약분쟁사건

코로나19 또는 그 방역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계약분쟁사건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, 법원에서는 코로나19가 서로 다른 지역, 산업, 사건에 주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19 또는 그 방역조치와 계약이행불능 사이의 인과관계 및 원인기여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고,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규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.

[MORE ▼](#)

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[상단 연락처로 연락](#)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, 법무법인(유)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법무법인(유)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[\[수신거부\]](#)를 클릭해 주십시오.